# 제4대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장 선거 실시 안내

2024년 12월 20일에 실시하는 제4대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2024년 12월 5일

대한파크골프협회 선거운영위원회

## 1. 선거 개요

○ 선 거 명: 제4대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장 선거

○ 선거일시: 2024. 12. 20.(금) 10:00 ~ 15:00

○ 선거장소: HJ컨벤션센터 강동점 통합세미나실

(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7 래미안강동팰리스 이스트센트럴타워 12층)

○ 주요일정

시행 일정	선거 일정
12. 5.(목)	선거일 확정·공고 및 임원 결격사유 게시
12. 6.(금)~12. 8.(일)	선거인명부 작성
12. 8.(일)	선거인명부 송부
12. 9.(월)~12. 11.(수)	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
12. 12.(목)	선거인명부 확정
12. 11.(수)~12. 12.(목)	후보자등록 신청서 접수·수리
12. 12.(목)	후보자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및 후보자등록 공고
12. 13.(금)	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신청
12. 13.(금)~12. 20.(금)	선거기간 (8일간)
12. 13.(금)~12. 19.(목)	선거운동 기간 (7일간)
12. 20.(금)	회장 선거일(소견발표, 투표, 개표, 당선인 결정)

## 2. 후보자 등록

### 가. 등록 개요

- 등록기간: 2024. 12. 11.(수) ~ 12. 12.(목) / 2일간 /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
- 등록방법: 사무처 방문(서면) 제출
- 제출기관: 대한파크골프협회 선거운영위원회(☎ 02-2135-7811) (주소)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, 올림픽회관 신관 207호
- 후보자 기호 추첨(게재순위) (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 2항)
- 추 첨 일 : 2024. 12. 12.(목) 18:10
- 추첨방법 : 후보자 또는 그 위임장[붙임8 서식]을 지참한 대리인 참여하에 추첨 결정
- 기타사항
- 후보자 등록 후 사퇴할 경우, 후보자 본인이 직접 사무처를 방문하여 사퇴 신고서 서면 제출

### 나. 제출 서류

제출서류	수량	참고서식
○ 후보자 등록신청서		[붙임1 서식]
○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		
-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포함)	1부	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(http://efamily.scourt.go.kr)
- 피성년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	1부	전자후견등기시스템 (https://egdrs.scourt.go.kr)
- 소속한 경력이 있는 체육단체*가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 (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후보자에 한함)	1부	스포츠윤리 센터발급 또는 [붙임2 서식]
- 제13조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 또는 제13조 제7항과 8항의 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체육단체 임직원이었던 경우에 해당)	1부	-
-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 (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는 후보자에 한함)		[붙임3 서식]
- 임원 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	1부	[붙임4 서식]
- 기탁금(5천만원)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1부	_
- 위법·부당거래 금지 서약서 (협회와 거래 관계에 있는 후보자에 한함)	1부	[붙임5 서식]
○ 이력서(사진 포함)	1부	[붙임6 서식]
*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		

### 다. 기탁금

- 후보자 기탁금 : 금 50,000,000원(오천만원)
- 계좌정보

예금주	계좌 정보
(사)대한파크골프협회	신한은행 100-033-005777

○ 기탁금 반환

#### 제 28 조 (기탁금의 처리)

- ①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후보자의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.
- 1. 당선인이 된 경우
- 2.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경우
- 3.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
- ② 본 협회는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, 반환하지 않은 기탁금은 본 협회에 귀속한다.
- ③ 후보자 등록 마감이후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기타사항
-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입금을 증명하는 서류(입금증 등)를 후보자 등록신청 시 함께 제출

## 3. 선거운동

### 가. 선거운동 개요

- 선거운동기간 : 2024. 12. 13.(금) ~ 12. 19.(목) 23:59 까지
- 선거운동방법 (회장선거관리규정 제18조)
- (주체) 3인의 선거 사무원(선거사무장 1인을 포함)
- (방법)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

연번	방법	가능대상
1	선거사무소 게시물의 설치 및 변경	후보자
2	선거공보를 이용한 선거운동	후보자
3	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	후보자, 선거사무원 등
4	정보통신망(SNS 포함)을 이용한 선거운동  * 전자우편(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·음성·화상·동영상 등을 주고받는 시스템, SNS를 포함)를 전송하는 방법  * 대한파크골프협회 홈페이지는 이용 불가하며, 선거관련 게시글이게시된 때에는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해당 정보 삭제 요청(단, 위원회에서 선거공보는 게시)	후보자, 선거사무원 등

5	윗옷(上衣) 및 어깨띠,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 ▲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하는 방법 ▲ 체육시설에서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하는 방법	후보자, 선거사무원 등
6	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정책토론회 참석 위원회 이외의 단체가 주최하는 후보자 대상 토론회 참석 (단, 후보자 모두가 개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)	후보자
선거일 당일 후보자 소견발표  - 선거일 투표 개시 전에 기호순에 따라 후보자 소개 및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소견발표(10분 이내 자유롭게)		후보자

\*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.

#### ○ 선거공보 원고 작성방법

- 제 출 일: 후보자 등록 공고(2024년 12월 12일)부터 선거운동 기간 중
- 용지크기: A4(210mm×297mm) 1매
- 디 자 인: 후보등록자가 홍보물 디자인하여 제출
  - 여백이 없도록 디자인
  - 글씨체, 크기임의
  - 칼라 사용가능
- 제출매수: 전산파일(원본 및 PDF파일)
- 기재사항
  - 성명, 나이, 후보자 기호
  - 사진(크기임의)
  - 학력.경력 등 주요약력
  - 정견 또는 공약 등
- 선거공보는 대한파크골프협회 홈페이지에만 게시되며, 선거인들에게 우편이나 개별 발송은 하지 않음.
- 본인의 입후보 배경 및 당선 시 추진업무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되 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.

#### ○ 선거사무원 등록

- 제 출 일: 2024년 12월 12일~19일(후보자 등록 공고일~선거운동기간 중)
- 제출서류: 선거사무원 등록신청서[붙임7 서식]
- 인 원: 3인의 선거 사무원(선거사무장 1인을 포함)
-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원 등록 신청 이후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.

### 나. 금지 행위

#### 제 19 조 (금지행위 등)

- 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위탁선거법"이라 한다) 제31조에서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②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본 협회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- 1. 선거인(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에 대하여 금전·물품·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(公私)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,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
- 2.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
- 3.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
-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・권유・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
- 5. 후보자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(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·운영하고 있는 기관·단체·시설을 포함한다)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
- ③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,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,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- ④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. 다만, 공개된 체육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

#### 제 20 조 (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)

- ①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(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도록 후보자,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.
-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,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**제 21 조 (위반행위에 대한 조치)** 위원회는「위탁선거법」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하여 중지, 경고, 시정명령,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**제 22 조(선거 위반행위 제재 통지)** 제21조의 조치에 대한 통지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.
- 1. 서면에 의한 중지, 경고 또는 시정명령 : 위반행위자 및 그 위반행위자와 관련된 후보 자에게 전화로 관련 사실을 먼저 통지하고,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우편 (전자우편을 포함한다)으로 통지
- 2. 선거인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: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을 문자로 통지하고 별 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통지. 단, 전자우편은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이 동의된 선거인에 한함.
- 3.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: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을 길이 42센티미터 너비 29.7센티미터 규격으로 5매를 작성하여 투표소의 출입구와 투표소 내 선거인이 쉽게 확인 가능한 장소에 각각 부착
-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지하거나 제한되는 행위는 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서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, 동 법령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라 중지, 경고, 시정명령,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

### 4. 투표방법

### 가. 세부 투표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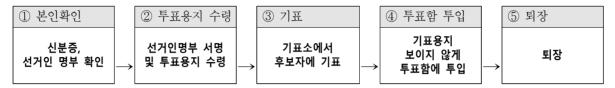
○ 투표일시 : 2024. 12. 20.(금) 10:00 ~ 15:00

○ 투표방법 : 대면투표(무기명 비밀투표,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, 선거인 1인 1표)

○ 투표장소 : HJ컨벤션센터 강동점 통합세미나실

(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7 래미안강동팰리스 이스트센트럴타워 12층)

○ 투표절차



○ 투표 세부일정 ※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

시간	내용	비고
09:30~10:00	- 행사 등록 및 접수	- 참석 서명, 필요정보 수집
10:00~10:05	- 개회식 및 인사말	- 회장 인사말
10:05~	- 후보자 소견발표	
소견발표 후 진행	- 투표 절차 설명 - 투표개시 선언	- 절차 안내 - 참관인 배치 등
	- 투표 진행	
	- 투표 종료선언 - 개표 개시 선언	
	- 개표 및 검수	- 선거운영위원회
15:00~	- 개표 종료 선언 - 개표 결과 발표	-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장
	- 당선인 인사말	
	- 폐회	

### ○ 유의사항

- 투표시간 준수(15시에 대기 중인 선거인까지 투표 가능)
- 투표 시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지참
-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사용(기표란에 지문을 찍는 등 다른 표시 무효)
- 기표란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표

### 나. 투표 및 개표 참관 (회장선거관리규정 제27조)

- 후보자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마다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과 개표소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할 수 있음
  - 선정방법: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 (회장선거관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)
  - 제출일시: (투표참관인) 선거일 전 2일까지 (개표참관인) 선거일 전일까지
- 기타사항
  -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이 겸임 가능
  - 참관인이 없는 경우 혹은 한 후보자 측만 있는 경우, 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선정.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본인승낙서를 제출(회장선거관리규정 별지 제16호 서식)
  -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협회 임직원은 투표참관인,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

### 5. 당선인 결정

- □ 결정 방법 (회장선거관리규정 제29조)
-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함
  -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
  - 후보자가 1인이거나 선거일 투표 개시 시작 전에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,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

2024년 12월 5일

대한파크골프협회 선거운영위원

